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81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박용갑 · 문진석 · 박희승
정준호 · 한민수 · 소병훈
이연희 · 어기구 · 한준호
안태준 · 염태영 · 맹성규
윤종오 · 손명수 · 서삼석
최혁진 · 김영환 · 박상혁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35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2,429억 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음.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업체가 2021년 발주한 도시철도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납품 기한이 경과하도록 전량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서울시가 395억 원에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을 추가 계약함.

특히, 해당 업체는 한국철도공사가 지급한 선금금을 계약과 관련이 없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를

했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금 588억 원에 대한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하여 선금금 반환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납품한 차량의 중량 기준 초과·냉난방 배전반 열화사고 등 부실제작 등 문제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이와 같은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금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다수의 공공기관이 해당 기업과 추가 계약을 체결함.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당업자 지정 시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정한 경쟁이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지급된 선급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